

# 보도참고자료 아시 도박해 대한 학생 수일이 나는

보도일시	배포 시	배포일시	2023. 1. 18.(수)		
담당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	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	정 훈	(02-2100-2653)
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	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석	(02-2100-2662)

#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

- 제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('23.1.18.) 의결 등-

#### 1.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

- 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중징계(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)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- □ 이 과정에서 「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고,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 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# 2. 주요내용

- 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**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** 하는 경우,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**또는 월별\*로 회사에 통지**하여야 합니다.(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)
  - \*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**투자권유자문인력·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**은 월별로,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

- □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
  - ①매매자금의 출연 여부, ②매매행위의 관여도, ③매매손 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- □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 습니다.
- □ 한편,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\*함으로써
  - \*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('20. 5. 13., 금융위·금감원 보도자료).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20% 감경
  - 업계의 **내부통제 강화**와 **자율적 시정을 촉진**해 나아갈 것입니다.

#### <붙임>「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」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	(02-2100-2650)
<총괄>		담당자	사무관	정 훈	(02-2100-2653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	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석	(02-2100-2662)
<공동>	금융위원회 심의지원팀	책임자	팀 장	이영평	(02-2100-2730)
		담당자	주무관	최지혜	(02-2100-2732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손기숙	(02-3145-7030)
<공동>	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송현철	(02-3145-7645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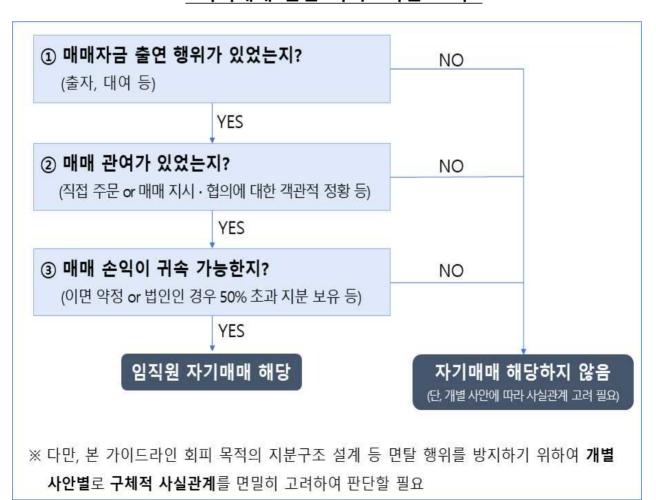
#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

※ 동 가이드라인은 **임직원이 타인(개인 또는 법인) 명의로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,** 자본시장법 제63조 상의 "**자기계산 매매" (이하 '자기매매') 해당 여부 판단**을 위한 **기준**을 제시하기 위함임

# 1 자기매매 해당여부 판단 기준

- [① 자금 출연 ➡ ② 매매 관여 ➡ ③ 손익 귀속 가능성]의
 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
- 다만, 임직원의 자기매매 판단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 고려 필요

#### <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요약>



# 2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(일반)

### (1) 매매자금 등의 출연

- **본인명의 계좌**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
- **본인명의 계좌**에서 **타인명의 계좌로 자금 등이 지급**(제3자 경유 포함)되어 타인명의 계좌에서 **매매**가 이루어진 경우
  - 타인에 대한 증여 등 **투자목적이 아닌 것**으로 확인되면 **자기** 계산에서 제외

#### (2) 임직원의 매매 관여

- **본인명의 계좌**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
- 본인이 **타인명의 계좌**를 통해 **직접 매매** 또는 **매매지시·협의**를 하였다는 **객관적 정황**이 확인된 경우
  - 주문주체, 타인과의 관계, 입출금 내역, 매매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매관여 여부 및 위반기간 판단\*
    - \* 매매행위 상당 부분에서 매매관여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출연 기간 동안의 매매행위 전체에 적용 가능

# (3)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

- o 타인명의 계좌에서의 매매대금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
  -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투자금 회수가 아닌 증여 등 **다른 목적**임이 확인되면 **자기계산**에서 **제외**
- 손익의 분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타인과의 관계, 매매관여 여부,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으로 손익귀속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정

# 3 법인을 통한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

#### (1) 매매자금 등의 출연

- o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**자금 등의 출연**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
  -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사용된 임직원의 자금 등의 출연 사실이 중요 하며, 출자, 대여 등의 출연 방식과 규모\* 등은 무관
    - \* 투자 금액의 규모, 기간 등은 제재 양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, 위반 사실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

#### (2) 임직원의 매매 관여

-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**아래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**\*하는 **매매 관여**가 있는 경우, 자기매매로 보기 위한 **매매행위**가 있었다고 인정
  - \* 매매행위 상당 부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매매관여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연 기간 동안의 매매행위 전체에 적용
  - ① 임직원이 법인의 주문을 직접 제출한 경우
  - ② 임직원이 법인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주문을 요청한 경우
- 다만, 소극적으로 매매내역 등을 사후통지받는 경우에도, 이면 약정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#### (3)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

- 아래 **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**\*하면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**손익**이 임직원에게 귀속 가능한 상태로 인정
  - \* 검사 적발 시점에서 실제 손익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, 임직원의 의사결정 권한 및 보유 지분율 등에 근거하였을 때 거래로 인한 손익이 언제든지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면 충분함

- ① 임직원(특수관계인 포함)이 법인에 대해 50% 초과 지분 보유
  - : 배당 의사결정 및 배당가능이익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유 하여 언제라도 이익배당 등 절차를 거쳐 손익이 귀속될 수 있는 경우
- ② 보유 지분율이 50% 이하이더라도, 검사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이면 약정,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
- ※ 법인의 경영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<sup>\*</sup>를 **상기요건 해당 판단 시** 함께 고려할 계획
  - \* 법인 설립경위, 임원현황, 인적 · 물적설비 구비 여부, 목적사업 정상 영위 여부 등

# 4 내부통제 점검 강화 및 전파

- ◈ 회사와 임직원은 내부통제 점검 강화를 통해 법인 등을 이용한
  차명 자기매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
- □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자기매매 여부를 **사전 점검**하여 법 위반을 **방지**할 수 있도록 **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함** 
  - 특히, **법인을 이용한 차명 자기매매**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**사전점검 이행절차** 필요
    - (회사) 임직원이 경영에 관여\*하고 있는 법인이 법상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·대여하는 경우,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 여부 사전 점검을 받도록 정기적(예시:분기)으로 안내하여야 함
      - \* 지분보유(실명 또는 차명),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
    - (임직원)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법상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·대여하는 경우,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 여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함